직무발명 배분율(기여율) 동의서

■ 발명의 명칭: SFCtoFTA 1.0 (신호흐름도 기반 고장수목 생성 프로그램)

순번	원내/외 구분	주/부 구분	발명자명	소속 부서	배분율 (기여율)	서명
1	원내	주	이상훈	리스크평가연구실	60%	OKLE
2	원내	부	신성민	리스크평가연구실	40%	OKLE Jan
			* #. E. F. S			
		ſ	4,			

상기 직무발명 건에 대한 발명자 기여도를 상기와 같이 배분함에 동의합니다.

작성일: 2021. 10. 14.

※ 참고사항

- 1. 본 동의서의 배분율(기여율)은 추후 기술실시나 양도로 인한 실시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됨
- 2. 주발명자는 반드시 1번 순위에 기재하고, 부발명자는 가급적 배분율 순으로 기재함
- 3. <u>주발명자의 배분율은 반드시 부발명자보다 높아야 하며</u>, <u>배분율의 합은 반드시 100%</u>가 되어야 함(각 발명자별 최저 배분율 미적용)
- 4. 직무발명 신고 시, 본 동의서에 기재된 <u>각각의 발명자로부터 반드시 서명(대리서명 불가)</u>을 득한 후 이를 첨부하여 제출함
- 5. <u>타기관 소속의 발명자가 있는 경우</u>, 소속부서란에 소속 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하되, 추후 원내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발명에 해당 발명자를 포함시킨 <u>근거서류를 제시</u>해야 함
- 6. 본 양식은 직무발명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), 프로그램, 품종 등에 공히 적용됨

